

##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
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법) 제8조」에 따른 「취업지원 신청인」의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하여 「취업지원 신청서」에 첨부되는 자료로 아래 해당하는 항목에 정확하게 체크 및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취업지원 신청인 인적사항

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주 소	연락처

취업지원 신청인 확인사항(신청일 현재 기준 해당하는 사항에 ✓)

연번	내 용	설명 및 확인
현재 취창업 중 여부 확인 (예정 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현재 근로(취·창업)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자등록증 보유, 일용직 근로 (아르바이트) 등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불문</li> </ul> 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자등록증 보유(개업일:           , 업종:            / 개업일:           , 업종:           ) - <input type="checkbox"/> 매출 또는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 (전년 합계:            / 직전 3개월 합계:           )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하고 있음 - 고용형태 <input type="checkbox"/> 상용직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약직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용직 - 근로계약기간(기간:           ) / 주당 근로시간(            시간) <input type="checkbox"/> 채용확정(일자: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, 사업장명:            )
현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취업 중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타 프리랜서 포함</li> </ul> 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업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있는 경우(아래 상세 체크) <input type="checkbox"/> 보험설계사, <input type="checkbox"/> 택배기사, <input type="checkbox"/> 학습지교사 및 방문교사,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여제품 방문점검원, <input type="checkbox"/> 방문판매원,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출모집인, <input type="checkbox"/> 카드모집인,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전제품설치기사, <input type="checkbox"/> 화물차주,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설기계종사자, <input type="checkbox"/> 컨서비스기사, <input type="checkbox"/> 대리운전기사, <input type="checkbox"/> 골프장캐디,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프리랜서(내용:           ) <input type="checkbox"/> 종사기간:           .           .           . ~현재까지 - <input type="checkbox"/> 매출 또는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 (전년 합계:            / 직전 3개월 합계:           )
구직촉진 수당 수급요건 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업, 군복무, 상급학교 진학 및           전문자격증 취득 학원 수강 중, 심신장애           및 간병 등</li> </ul> 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역예정장병(2개월 이내 전역 예정)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있는 경우(아래 상세 체크) <input type="checkbox"/> 학업 중(대학·원 마지막 학기 예외) <input type="checkbox"/> 군복무 중 또는 예정(6개월 이내) <input type="checkbox"/>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 수강 중 <input type="checkbox"/> 심신장애 또는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사유 (            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최근 6개월 이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여부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참여 중 또는 <input type="checkbox"/>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공공업무지원형,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보조형, <input type="checkbox"/> 인턴형,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봉사·복지형 (종료(예정)일자:           ) * 공공부문에서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·경과적 일자리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최근 6개월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수급 여부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수급 중 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(기간 :           ) - 수급 금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 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(사업명:            )

연번	내 용	설명 및 확인
기타재산 확인 (가구원 전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조합원입주권 보유 여부</li> <li>- 평가액, 납부액, 청산금 확인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있음(아래 ①+②-③ 합계액으로 파악) - 조합원 입주권 : 원 - ①건물의 평가액 : 원 - ②청산금 납부액 : 원 - ③청산금 지급액 : 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분양권 보유 여부</li> <li>- 계약금, 중도금 등 납입금액 확인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있음(아래 ①+② 합계액만 해당) - 분양가격 : 원 - ①계 약 금 : 원 - ②중도금 납부액 : 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승용자동차</li> <li>- 재산항목에서 제외되는 요건 확인 차원</li> <li>- 9년 이상 차량 가격은 공적 정보로 조회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보유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승용자동차 보유( 대) - 보유한 승용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차량번호 기재 <input type="checkbox"/>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유공차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소유 자동차 (차량번호: )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소유 자동차(차량번호: ) 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대상 자동차(차량번호: ) <input type="checkbox"/> 영업용 자동차(차량번호: )
재산공제 내역 (가구원 전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임대보증금 보유 여부</li> <li>- 일반재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(전세금 등 포함)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있음(아래 해당 항목 기재) - 금액 : - 보증금 내용 : - 금액 : - 보증금 내용 : *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자료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자료 미제출시에는 인정되지 않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부채</li> <li>- 토지·주택·건물, 임차보증금, 분양권, 조합원 입주권, 자동차 등 재산 취득을 위한 대출금</li> <li>- 위 재산에 연동된 금융권 대출만 적용하고 일반 생활(신용) 대출과 사적채무는 제외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있음( 각 항목을 합한 금액)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1 (내용: , 금액: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2 (내용: , 금액: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3 (내용: , 금액: 원) * 최초 총 대출액에서 상환금액을 제외하고 현재 남은 부채잔액 기재 * 반드시 등기부등본, 자동차 금융프로그램 계약서, 금융권 발행 대출잔액 증명서 제출 * 위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인정되고 미제출시에는 인정되지 않음
취업경험 요건 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취업경험 요건 확인</li> <li>- 1 유형 요건심사형만 해당</li> <li>-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기간 및 소득(매출)만 해당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있음(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만 입력)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경우 : 근무처와 근무기간만 기재 - 근무처: 근무기간: 근무일수: - 근무처: 근무기간: 근무일수: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무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: 근무처와 소득 또는 매출액 기재 - 근무처: □소득, □매출액 금액: - 근무처: □소득, □매출액 금액: * 고용보험 이력(일용근로 포함)과 사업자등록증 기간은 공적자료로 확인되니 별도 기재할 필요 없으며, 특고·프리랜서(용역서비스 등)로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신고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 * 반드시 입증자료(소득 또는 매출 확인 자료, 별지서식의 사업주 발행 확인서)을 제출하여야만 인정되며 미제출시에는 인정되지 않음
기타 요건 (학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최종 학력</li> <li>- 고졸 이하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계 고교 재학생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계 고교 재학생

연번	내 용		설명 및 확인
			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계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계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졸이하(무학 포함) * 비진학 고교 3학년은 졸업년도 1.1부터 참여 가능
		- 대학 재학 이하	<input type="checkbox"/> 2,3년제 대학교(인문, 사회, 예체능) 재학생 <input type="checkbox"/> 2,3년제 대학교(기타계) 재학생 <input type="checkbox"/> 4년제 대학교(인문, 사회, 예체능) 재학생 <input type="checkbox"/> 4년제 대학교(기타계) 재학생 *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5.1부터, 8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1월부터 참여 가능
		- 대졸 이상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졸(인문, 사회, 예체능) 이상 미취업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졸(기타계) 이상 미취업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원(인문, 사회, 예체능) 재학생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원(기타계) 재학생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원(인문, 사회, 예체능) 이상 졸업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원(기타계) 이상 졸업

□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한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 등 확인사항

구분	질문	답변
① 근로 능력	■ 나는 구직활동이나 취업하는데 정신적·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문제가 없다	<input type="checkbox"/> 예,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② 구직 의사	■ 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능력을 개발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	<input type="checkbox"/> 예,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③ 취업 의사	■ 나는 내가 원하는 적당한 일자리가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취업할 의사가 있으며, 상담자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	<input type="checkbox"/> 예,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④ 취업장애요인	■ 나는 구직활동이나 취업을 하는데 취업장애요인이 있다 - 취업장애요인: 신용불량 등 경제적 문제, 가정환경(육아, 가족 돌봄 등), 주거·의료·교육문제, 가족폭력 등 위기가족지원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예,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
## [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한 안내사항 ]

○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(취업활동비용) 등을 지원받는 자는 개인적인 불이익 방지 등을 위하여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

### □ 입증자료 제출요구 성실히행 안내

○ 취업지원 신청인의 수급자격 조사를 위하여 신청인과 신청인 가구원의 소득, 재산 조사를 하게되며, 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인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사실대로 신고 또는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.

○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필요시 신청인의 가구원 확인,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조사, 신청인의 취업경험 요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신청인은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요구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지원 신청이 반려되거나 수급자격이 불인정 될 수 있으며,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이 완료된 기간만큼 동 신청서의 처리기한은 연장됩니다.

### □ 구직활동의무 성실히행 안내

○ 이 법에 따른 수급(자격)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취업활동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.

-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만 지급되며, 구직활동은 매회 최소 2개 이상을 정해서 의무 이행하여야 합니다.

-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취업활동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상담자와 협의되지 않은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아 구직촉진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지급되며, 지급되지 않은 수당 등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총 지급액에서 소멸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.

### □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및 철회 안내

○ 아래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철회되거나 수급권이 소멸되어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이 중단됩니다.

① (취업활동계획 수립 의무)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필요한 의무 부과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됩니다.

② (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) 법 제21조에 따라 수급자의 지급주기 기간중 발생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(50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하고, 정지횟수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되고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.

③ (구직촉진수당 지급중단) 법 제2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고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, 지급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회차의 지급을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권이 소멸됩니다.

※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소득(매출)이 발생 경우에는 해당 지정일에 반드시 신고하여 감액 또는 부지급, 정상지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.

### □ 개인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허위 대리 동의 금지

○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을 신청하는 자가 취업지원 신청 과정에서 가구원의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개인정보 주체의 직접적인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신청인이 임의적으로 허위 대리 동의하는 경우에는,

- 향후 부정수급 문제, 형사처벌 대상(사기, 개인정보보호법 위반, 공무집행방해 등)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개인정보 주체의 직접적인 동의를 받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□ 부정수급 관련 고지 내용

① (주민등록 허위신고 금지) 취업지원 신청인과 가구원이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거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가구원을 주민등록표에 분리 또는 포함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제재가 있게 됩니다.

② (취업 및 소득 신고 의무) 법 제21조에 따라 지급주기 중에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창업(고용형태 불문)한 경우에는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또는 취업활동비용 신청서 제출을 통해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-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취·창업을 하였거나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(월 50만원 이상)이 발생하였으나 신고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게 되면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됩니다.

※ (안내) 행정처분인 부정수급은 고의·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, 신청인이 법·규정을 알지 못했거나 착오에 의한 신청·수급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처분받게 됩니다.

③ (부정행위 지급제한) 법 제27조에 따라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은 날 이후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,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며,

- (반환명령) 법 제28조에 따라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액을 배액 추가징수 반환명령하며, 부정수급한 날 이후 지급된 금액도 반환명령하며, 부정수급에 공모한 자도 부정수급한 자와 연대(총 반환명령액 공동 납부 책임)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- (형사처벌) 법 제38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등 부정수급자 및 공모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### □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종료 등에 대한 안내 사항

- **(취창업증인 자 수급자격 제한)** 국민취업지원제도 I·II유형 모두 미취업 상태인 경우 참여가 가능하나, 예외적으로 불완전 취업자(임금근로자는 주30시간 미만 근로, 특고 및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증 보유 사업소득자는 월소득 250만원(월매출 1,250만원) 미만)는 참여가 가능합니다.  
 - 다만, 불완전 취업자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완전한 취업상태(임금근로자 주30시간 이상,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이상 등)에 해당되면 취·창업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종료처리 됩니다.
- **(정기적인 소득 발생 구직촉진수당 수급 불가)**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격 인정기준과 구직촉진수당 수급 인정 기준이 각 적용됨에 따라서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구직촉진수당이 당연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 
 - 구직촉진수당은 수당 지급 요건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. 대표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월 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에 따라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참여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.
- **(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의무 제출)** 지정일이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수급권이 소멸됩니다. 또한, 어떠한 이유로든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2회 이상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령에서 정한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가 없으며,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에 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종료(중단)될 수 있습니다.
- **(취업지원서비스 거부시 제재 등)** 고용서비스기관은 수급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며, 수급(자격)자는 상담자와 상호 협의하여 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히 참여(이행)하여야 합니다.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서비스기관에서 제공한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거부(미이행)하거나, 근거법률(고시 및 지침 포함)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종료(중단)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위 「취업지원 신청인 확인 사항」 및 「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한 안내사항」의 내용을 모두 자세 읽고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며, 위 확인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, 취업활동비용,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원받으면 위와 같은 부정수급으로 인한 제재를 받게 됨을 확인하였습니다.

아울러,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자로 선정되면, 근거 법률 및 고시, 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취업지원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취업의욕고취 및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취업에 성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